

원료

[]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

[]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

신청서

※어두운 칸(■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		180일

신청인	상호(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)	등록번호(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 판매업자만 해당합니다) 또는 법인등록번호
	성명	
	소재지	전화번호

신청 내용	
분류	[]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 []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※ 사용 제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([] 색소 [] 보존제 [] 자외선차단제 [] 기타)
성분명	
신청내용	현재(변경 전) 및 신청내용(변경 후)이 포함되도록 기재합니다.
비고	

「화장품법」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금지 원료의 해
제(변경) 또는 사용제한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(변경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담당자 성명

담당자 전화번호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

첨부서류	1. 제출자료 전체의 요약본 2. 원료의 기원, 개발경위, 국내·외 사용기준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3.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4.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(유효성에 관한 자료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5. 원료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및 시험성적서	수수료 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별표 9에서 정한 금액
------	--	--

